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안』
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현행법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
전문기관으로 국가와 광역시·도에 각각 중앙 및 지역장
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보건복지

지부는 지침을 통해 신속한 학대 신고 및 사후 처리를 위해 통일된 기관의 명칭 및 로고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한편 서울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명칭을 ‘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’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바, 타 광역시·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들과 다른 성격의 별도 기관으로 인식되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‘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’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안 제9조의 제명 ‘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’를 ‘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안 제9조의2 ‘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’을 ‘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’으로 변경했습니다.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